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427호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7조의12 및 제77조에 따라 차대번호 등의 표기업무 등 4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8월 8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【 차대번호 등의 표기업무 등 4개 업무 위탁 】

1. 위탁받은 기관

- 명 칭 : 한국교통안전공단
- 대표자 : 권 용 복
- 소재지 :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17

2. 위탁업무
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대번호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에 관한 업무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의4에 따른 자기인증 면제에 관한 업무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업무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 업무

3. 위탁기간

-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당사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됨